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·금융산업의 선진화
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		·금융시장의 글로벌화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			
책임자	김정각 과장 (2156-9890)	담당자	신장수 사무관 (2156-9891)	
배포일	2012. 7. 4.(수)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4)	총 2 매

제 목 :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

1.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2012. 7. 4(수)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**금융투자업규정**」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'12. 7. 10(화) 시행될 예정

※ 규정개정 경과 : 규정변경예고('12.3.30 ~ 5.9.), 규개위 협의('12.6.11)

- 동 규정 개정은 건설·부동산 경기 회복 지원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,

*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여 분양·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(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공사비 지급)

-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여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

* 「펀드판매 선진화 방안」 ('11.12.8.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규정개정 이외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·수익율 비교공시시스템(금투협회) 구축, 판매채널 다각화 등 추진 중

II. 주요 내용

가.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

□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(금투·여전 동일)으로 강화

○ 다만,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강화

* 현재 최저적립기준에서 추가되는 적립율의 50%는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, 나머지 50%는 1년 이후부터 반영

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방안

분류	현행	개정
정상	0.5%	2%
		3% ¹⁾
요주의	2%	7% ²⁾
		10%
고정	20%	30%
회수의문	50%	75%
추정손실	100%	100%

1) 최초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

2) 신탁사업장이 아파트인 경우

나. 계열사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

□ 펀드판매사가 계열관계 등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게 대한 차별적인 보상, 성과보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를 금지